

# 고 소 장

고소인 0 0 0

○○시 ○○구 ○○길 ○○ (전화번호: ○○○ - ○○○○)

주민등록번호: 111111 - 1111111

직업:

피고소인 △ △ △

○○시 ○○구 ○○길 ○○ (전화번호: ○○○ - ○○○○)

주민등록번호: 111111 - 1111111

직업:

고소인은 피고소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소하오니 철저히 조사하여 법에 따라서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피고소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로서 20〇〇. 〇. 〇. 〇〇:〇〇경 〇〇시 〇〇구 〇〇길 〇〇번지 소재 고소인이 경영하는 '〇〇음식점'에 들어와서 공연히 종업원에게 시비를 걸어 욕설을 하면서 행패를 부리는 것을 고소인이 말리자 피고소인은 고소인에게 너도 똑같은 놈이라며 뺨을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흔드는 등 폭행을 가한 사실이 있어 고소하오니 조사하여 엄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첨 부 서 류

1. 진단서

1통

2. 목격자 진술서

1통



20ㅇㅇ년 ㅇ월 ㅇ일

위 고소인 〇 〇 〇 (인)

○ ○ 경 찰 서 장(또는 ○ ○ 지 방 검 찰 청 검 사 장) 귀 중

제출기관	범죄지, 피의자의 주소, 거소 또는 현재지의 경찰서, 검찰청	공소시효	○년(□공소시효일람 <mark>м</mark>
고소권자	피해자(형사소송법 223조) (※ 아래(1)참조)	소추요건	반의사불벌죄
제출부수	고소장 1부	관련법규	형법 260조
범죄성립 요 건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때		
형 량	· 2년 이하의 징역 ·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		
불기소처분 등에 대 한 불복절차 및 기 간	<ul> <li>○ 근거 : 검찰청법 10조</li> <li>○ 기간 : 처분결과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검찰청법 10조4항)</li> <li>○ 대정신청)</li> <li>○ 근거 : 형사소송법 제260조</li> <li>○ 기간 : 항고기각 결정을 통지받은 날 또는 동법 제260조 제2항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형사소송법 제260조 제3항)</li> <li>○ (헌법소원)</li> <li>○ 근거 : 헌법재판소법 68조</li> <li>○ 기간 :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의한 구제절차를 거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최종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헌법재판소법 69조)</li> </ul>		

#### ※ (1) 고소권자

#### (형사소송법 225조)

- 1. 피해자가 제한능력자인 경우의 법정대리인
- 2.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의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 자매. 단,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고소할 수 없음

#### (형사소송법 224조)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고소할 수 없음[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8조에서는 "성폭력범죄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24조(고소의제한) 및 군사법원법 제266조에 불구하고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할 수 있다."고 규정함]